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5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이종욱 · 박정훈
김상훈 · 엄태영 · 신성범
송석준 · 김태호 · 조배숙
김예지 · 윤상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복무(10년 이상 복무)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, 중기복무(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)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).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경력기간”을 “취업지원 제한, 경력기간”으로, “제35조의2”를 “제34조의2, 제35조의2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장기복무”를 “중·장기복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기복무”를 “중·장기복무”로, “그 자녀”를 “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취업지원 등) ① (생 략)	제14조(취업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 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 기관,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,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,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 무, 업체 등의 신고, 보훈특별 고용, <u>경력기간</u> 의 합산 및 차별 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3 3조, 제33조의2, 제33조의3, 제3 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<u>제35 조의2</u>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업지원 제한, 경력기 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4조의2, 제35 조의2</u>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교육지원) ① 국가는 <u>장기 복무</u> 제대군인으로서 「고등교 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(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	제19조(교육지원) ① ----- <u>중 · 장기복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중·장기복
무-----장기복무 제
대군인의 자녀-----

-----.